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4일

발 의 자 : 권영애, 김육영,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임태근, 정윤주

1. 제안이유

성북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태조사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6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7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 2024. 3. 7. ~ 2024.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적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기회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4.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공동체의 이익과 제2조제1호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경제”로,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을 “풍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대표
3.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사회적가치”란 <u>경제 · 문화 · 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u> <u>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u>	1. “사회적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 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u>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u> <u>나. 지역사회 재생</u> <u>다. 남녀의 기회 평등</u> <u>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기회 회복</u> <u>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u> <u>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u> <u>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u> <u>아. 그 밖에 노동 · 복지 · 인권 · 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 환경적 복리증진</u>

2.·3. (생 략)

4.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5. ~ 9. (생 략)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수립 정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객관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생활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

2.·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공동체의 이익과 제2조제1호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 9. (현행과 같음)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위원

2.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력이 풍부한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대표

<신 설>

3. (생략)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신 설>

④·⑤ (생략)

제17조(운영) ① ~ ⑤ (생략)

<신 설>

----.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대표

<삭 제>

3.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간지원 조직 대표

4. (현행 제3호와 같음)

2. -----
----- 2명

5. 사회적경제-----
----- 풍부한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